

『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18일

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“구미발갱이들소리”의 효율적인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
-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

- 들소리에 관한 기록·자료 등의 수집·전시·발간 및 조사연구
- 들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등

○ 이용대상 및 개관, 휴관(안 제4조, 안 제5조)

- 들소리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자, 각종 공연·연구·발표자 등
- 1월 1일, 설날 및 추석 연휴,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

○ 사용허가 및 운영의 위탁(안 제6조, 안 제9조~제16조)

-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
-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들소리 기능보유자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

○ 운영위원회(안 제17조~제21조)

- 위원수 및 임기 : 위원 11인 이내, 임기 2년 이내 — 연임가능
 - 당연직 : 위원장 부시장(당연직), 정책기획실장
 - 위촉직 : 의회의원(2인),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

○ 보존회 활동 지원(안 제22조)

-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,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

라. 참고사항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6조, 제7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를 총 제5장 제25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위치, 업무 및 기능, 개관 및 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용허가, 운영의 위탁, 수탁자 선정, 협약체결, 운영지원 등 전수관의 사용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, 명칭, 구성, 회의, 임기,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전수관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선조들의 삶이 서려있는 구미발갱이들소리의 전승보존과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